

#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1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8. 19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8. 20.

라. 상정일자 : 2010. 9. 8.(제187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정태욱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
- 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과 회의운영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·운영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 등을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.(안 제2조)

-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.(안 제3조)
-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정책 기획관이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맡도록 함.(안 제6조)
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#### ○ 동 조례의 제정안은

-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을 모색하여 자문기구로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
- 시민의 이익·편의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의 개발과 생활현장의 불편해소,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「시정정책참여위원회」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
- (조례안 제2조) “위원회의 기능”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,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,
- (조례안 제4조) “위원회의 회의”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회의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됨.

- (조례안 제5조) "분과위원회" 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였음.

#### ○ 조례안의 기타 검토사항으로

-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"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"로 되어 있는바 위원장을 복수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본 조례안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바,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시정참여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지난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민원로회의 운영 조례와 중복될 염려가 있으며, 기존에 폐지되었던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의 차별적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 < 질 의 >

- 홍성욱, 이재병, 김기홍, 전원기, 차준택 위원
  - 다양한 시민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조직을 시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적이 있는지?
  - 구성인원 50명이면 회의가 원활히 되겠는지?
  - 위원장 2명을 두게 되는 사유
  -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(2011년 예산은?)
  - 자문기구에서 공무원출석, 자료제출 요구 부분이 필요한지

## < 답 변 >

### ○ 정태욱 기획관리실장

-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수가 너무 적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움이 있음.
- 행정기관에서 보통 위원회를 공무원과 민간위원 각 한사람씩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.
- 회의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약 3~4천만원 정도임.
- 요청을 할 수 있지, 조례에서의 의무조항은 없음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홍성욱, 신동수, 김기홍, 전원기, 차준택, 허회숙 위원

## 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 (재석위원 6명 : 찬성 5명, 반대 1명)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시정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함께 동반자로서 정책제언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로자문회의 이외의 구성은 반대(허회숙 위원)

## 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 중 "50명 이내의" 를 "25명 이내의" 로 한다.

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

안 제5조를 삭제한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.

#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<u>50명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<u>25명 이내의</u>----- -----</p>
<p>제4조(구성 등) ①~② &lt;생략&gt; <span style="padding-left: 100px;">&lt; 신 설 &gt;</span></p>	<p>제4조(구성 등) ①~② &lt;제정안과 같음&gt; ③ <u>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분과위원회) ① <u>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 ② <u>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 &gt;</p>
<p>제6조(간사) &lt;생략&gt;</p>	<p>제5조(간사) &lt;제정안 제6조와 같음&gt;</p>
<p>제7조(의견청취 등) ① <u>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② <u>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(의견청취 등) <u>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조(수당 등) &lt;생략&gt;</p>	<p>제7조(수당 등) &lt;제정안 제8조와 같음&gt;</p>
<p>제9조(운영세칙) &lt;생략&gt;</p>	<p>제8조(운영세칙) &lt;제정안 제9조와 같음&gt;</p>

#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
2.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
3.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 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 
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,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6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